투자 위험 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IBK자산운용㈜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IBK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IBK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IBK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IBK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bkasset.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17년 09월 3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7년 10월 2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 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홈페이지 → www.kofia.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나. 운용자산별 종류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마. 특수형태 표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나.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나. 특수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나. 환매
다. 전환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나. 과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나. 대차대조표
다. 손익계산서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나. 연도별 수익률(세전 기준)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나. 주요 업무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5) 투자신탁의 합병

나. 잔여재산분배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라. 손해배상책임

마. 재판관할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2) 자산운용보고서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4) 기타장부 및 서류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2)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요약 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7.09.30)
IBK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 65435)

투자 위험 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IBK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BK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럭셔리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 상장예정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DR)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추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 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집합투자업자		IBK자산운용 주식회사(02-727-88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17.10.20**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bkasset.com) 참고			
종류(Class)		A	S	C1	C-w
가입자격		제한없음	온라인판매시스템	적립식 고객	랩어카운트고객
판매수수료		[선취]납입금액의 1.0% 이내	[후취]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	-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보수 (연, %)	판매	1.0000	0.3500	1.1000	0.0000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 1.0000 [신탁업자] 0.0700 [일반사무관리회사] 0.0200			
	기타	0.0025	0.0000	0.0025	0.0000
	총보수·비용	2.0925	1.4400	2.1925	1.0900
	합성총보수·비용	2.1134	1.4609	2.2134	1.0900
※ 주석사항		- C-f / S-P/ A-e / C-e 클래스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는 매 3개월 후급이며, 기타비용 및 증권 거래비용은 사유 발생시 지급합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매입 방법		(15시30분 이전) 3영업일 기준가 매입 (15시30분 경과후) 4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15시30분 이전) 4영업일 기준가 8영업일 지급 (15시30분 경과후) 5영업일 기준가 9영업일 지급	

기준가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 순자산총액 "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90%이상을 럭셔리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된 기업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IBK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이익이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비교지수] S&P Global Luxury Index 90%+Call loan 10%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IBK자산운용의 홈페이지(www.ibksasset.com)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2. 투자전략

가. 기본 운용 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90%이상을 **IBK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IBK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전략]

- 자산의 60%이상을 럭셔리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 상장예정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DR)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

<투자프로세스>

▶ Step 1 정보수집

- **거시경제 분석**
  - 글로벌 경기 분석
  - 주요국 정책 변화
  - 금융시장 모니터링
- **산업분석**
  - 럭셔리 산업분석
  - 소비재 산업분석
- **광범위한 자료 수집**
  - 연구소, 증권사 Research
  - 컨설팅기관, 기업공시자료.

▶ Step 2 투자유니버스

- **투자 유니버스 선정**
  - 럭셔리 관련 인덱스(S&P, MSCI)
  - 브랜드 순위 발표기관 자료
  - 럭셔리 산업 노출 정도
- **기업분석**
  - 브랜드 가치
  - 가격결정력
  - 경영전략
  - 밸류에이션
  - 턴어라운드, M&A

▶ Step 3 포트폴리오 구축

- **핵심포트폴리오**
  - 30 ~ 50개 내외
- **편입 유효성 점검**
  - 기업 모니터링
- **리밸런싱**
  - 목표주가
  - 비중조절
  - 종목교체
- **투자 가이드라인 준수**
  - 법률 및 투자가이드라인 숙지

※ 상기의 프로세스는 실제 운용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목 선정>

브랜드 파워	▪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가격차별화 ▪ 글로벌 유통망 확보 ▪ 글로벌 소비자의 인지도 확보
매출다변화	▪ "중장기 투자"를 전제로 상품 포트폴리오 및 글로벌 매출 다변화를 통해 경기변동에 따른 매출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은 우량기업
성장기업	▪ 매출액 및 기업이익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장 기업 발굴

<포트폴리오 구성>

▪ 강력한 브랜드 가치 및 펀더멘털을 보유한 산업별 대표주로 핵심 포트폴리오 구성
▪ 산업별 및 종목별 비중 조절을 통한 초과수익 확보
▪ 전략 포트폴리오를 통한 초과수익 확보

구 분	비 중	내 용
핵심 포트폴리오	~80% 이내	▪ 벤치마크(BM)를 추종하는 가운데 ▪ 시황변동에 따라 벤치마크 대비 산업별 /종목별 비중 조절(수시)
전략 포트폴리오	~20% 이내	▪ 브랜드 인지도 확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발굴 ▪ 목표주가설정, 종목교체, 비중 조절(수시)

※상기 운용전략은 참고자료로서, 실제 운용시에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모투자신탁은 럭셔리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3. 운용전문인력(2017.09.30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신준형	1975	책임 운용역 (부장)	32개	3,307억원	-KAIST 대학원 금융공학 -삼성카드 (00.07~04.02) -새마을금고연합회 (07.04~08.03) -KB생명 (08.04~08.10) -IBK 자산운용(08.10~현재)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주 1)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2)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16.10.01 ~ 17.09.30	15.10.01 ~ 16.09.30	14.10.01 ~ 15.09.30	13.10.01 ~ 14.09.30	12.10.01 ~ 13.09.30
IBK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증권자 A	26.34	2.82	5.28	-5.22	26.36
비교지수	24.90	-1.80	2.58	-5.20	33.66

주1)비교지수 : 설정일~2017.03.09까지: MSCI World Textile Apparels and Luxury goods Index 90%+Call loan 10%
2017.03.10~: S&P Global Luxury Index 90%+Call loan10%
주2)종류A(선취판매수수료 징구)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 주요 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해외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로 외화표시 해외증권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 및 시간차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되는 기초자산의 통화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요 통화에 대하여 환헷지를 수행함으로써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환율변동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화자산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자산과 관련된 운용업무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였으나, 2017년 3월 10일부터 IBK자산운용의 직접운용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 이 투자신탁은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6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된 후 3 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투자위험등급을 분류 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는 각 투자되는 기초자산의 통화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외화표시 자산의 표시통화에 대하여 환헷지를 수행하며, 실질 투자 통화간의 환율변화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환헤지 비율은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해당 외화자산 순자산평가액의 80%이상을 헤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 설정·해지, 환율변동, 주가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다음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및 일반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종류 S-P 수익증권 수익자(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정보는 정식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중 1. 재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bk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bkasset.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IBK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65435)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C-w	종류C-f	종류S	**종류S-P**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5436	65437	65573	70365	AQ670	**BM900**

(종류) 클래스	종류 A-e	종류 C-e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Y875	BY87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투자신탁해지일까지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매입)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1) 기준시간(오후 3시30분)이전에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배정됩니다.

(2) 기준시간(오후 3시30분)경과후에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배정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IBK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65435)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C-w	종류C-f	종류S	종류S-P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5436	65437	65573	70365	AQ670	BM900

(종류) 클래스	종류 A-e	종류 C-e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Y875	BY87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내용
2007.02.20	최초설정
2007.06.14	집합투자규약 변경(종류C3)
2009.05.04	자본시장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펀드 명칭 변경 (기은SG 링크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주식자투자신탁→ 기은SG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2009.12.31	집합투자규약등 변경 ①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이익분배금 유보내용 반영 ②모투자신탁의 해외 위탁집합투자업자 명칭 변경 ③시행령 개정에 따른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율 반영
2010.02.19	집합투자규약등 변경 ①펀드명칭, 집합투자업자명칭 변경 ②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과세방법 변경 반영 ③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발송 방법 변경
2010.03.16	집합투자규약 변경(매입 시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결산에 따른 확정된 재무제표 반영
2010.05.03	집합투자규약 등 변경 - ①집합투자규약 변경 : 판매보수 인하
2010.07.13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해지사유 변경)
2010.10.01	해외위탁운용회사 변경 Société Générale Gestion S.A. → Wells Capital Management Inc.
2011.02.08	①집합투자업자 주소 변경 ②모투자신탁의 환헷지 통화 추가(EURO → EURO, USD)
2011.04.08	결산으로 인한 확정된 재무현황 업데이트
2012.08.31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변경 – 해외위탁운용회사 변경 (Wells Capital Management Inc. → Credit Suisse(Singapore) Limited) 결산으로 확정된 재무현황 업데이트
2013.08.29	재무현황 등 업데이트
2014.01.23	①자본시장법 개정(2013.08.29) 시행 반영 ②세법 개정(2014.01.01) 시행 반영 :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연장 ③회사정보 업데이트
2014.03.28	①책임/부책임 운용전문인력 변경 ②S클래스 신설

2014.05.19	결산으로 인한 확정된 재무현황 업데이트
2015.04.20	①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개정 반영/단기자금운용방법 추가/소규모해소계획 신설) ②투자결정시 유의사항(FATCA반영/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 ③결산에 따른 확정된 재무현황 및 회사정보 업데이트 ④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내용 반영
2015.12.03	운용전문인력 변경
2016.02.26	①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과세특례 신설 내용 반영 ②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③회사정보 업데이트
2016.07.0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08.01	①매입 및 환매 기준시간 변경 ②펀드과세 방법 관련 세법 개정 반영 ③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④신용등급 관련 내용 추가 ⑤결산에 따른 확정된 재무현황 및 회사정보 업데이트
2017.03.10	①해외위탁운용에서 직접운용으로 변경 (Credit Suisse(Singapore) Limited → IBK자산운용 직접운용) ②위탁운용->직접운용 변경에 따른 운용프로세스 변경 ③BM변경: MSCI World Textile Apparels and Luxury goods Index 90%+Call loan 10% -> S&P Global Luxury Index 90%+Call loan 10% ④종류S-P신설 ⑤종류C2, C3 클래스명 변경 (C2->C-w, C3->C-f) ⑥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변경(13.4%->14.3%) ⑦결산에 따른 확정된 재무현황 및 회사정보 업데이트
2017.10.20	①종류A-e, C-e 신설 ②환매수수료 제거 ③환헷지 전략 기술 명확화 ④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제59조의3) ⑤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정보 갱신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IBK 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연락처 : 02-727-8800, www.ibkasset.com)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해외자산 운용에 대한 업무를 **Credit Suisse(Singapore) Limited**에 위탁하였으나, 2017년 03월 10일부터 IBK자산운용의 직접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2017.09.30 기준)

해당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은 아래 자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과 동일합니다.

①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신준형	1975	부장	32개	3,307억원	-KAIST 대학원 금융공학 -삼성카드 (00.07~04.02) -새마을금고연합회 (07.04~08.03) -KB생명 (08.04~08.10) -IBK자산운용(08.10~현재)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주1)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AI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상기의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 3)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②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3년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유치영	~ 2014.03.27
신준형	2014.03.28 ~ 현재

부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신준형	~ 2014.03.27
황재희	2014.03.28 ~2015.12.02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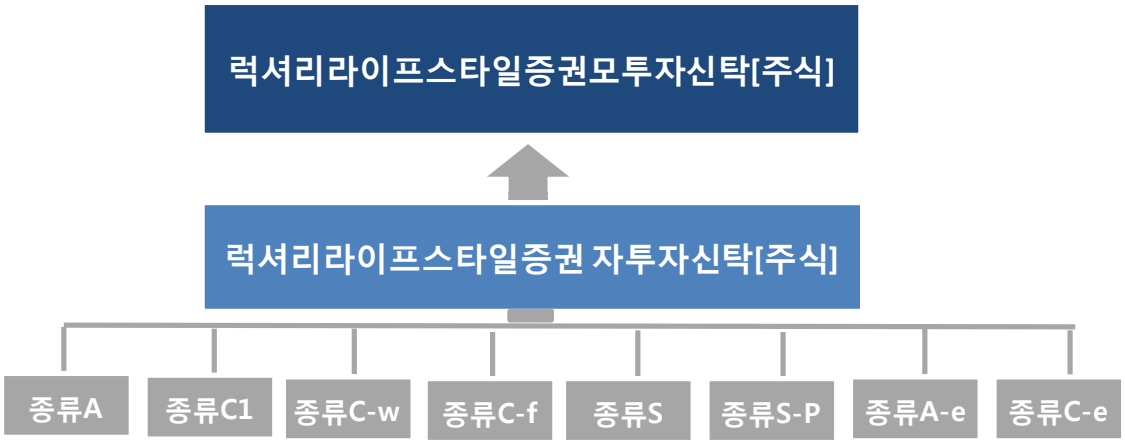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IBK 럭셔리라이프스타일증권모투자신탁[주식]
IBK 럭셔리라이프스타일증권자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이상
IBK 퇴직연금럭셔리라이프스타일증권자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이상

※ 상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중은 신탁계약서상의 투자비중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 내용
IBK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대상	주식 60%이상 투자
	투자목적	자산의 60%이상을 럭셔리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 상장예정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DR)등에 투자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 추구. 각 투자되는 기초자산의 통화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외화표시 자산의 표시통화에 대하여 환헤지 수행
	비교지수	S&P Global Luxury Index 90%+Call loan 10%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구성>** ▪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투자유니버스 구성 ▪ 기업탐방, 정량적/정성적 리서치 분석과 성과적용을 통하여 투자대상 선정 ▪ 30~50개 내외의 집중된 포트폴리오 구성
	주요 투자위험	환율변동위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변경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기회비용 및 수수료 위험
	등록신청서 제출일	2009.04.29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판매보수	선취/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연 1.00%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이내	해당사항 없음
C1	적립식으로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납입가능한 수익증권 가. 정액적립식 :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또는 좌수를 정하여 매월 투자하는 방식	연 1.1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 자유적립식 : 일정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투자하는 방식			
C-w	랩어카운트 고객	연 0.00%		해당사항 없음
C-f	투자자가 법 제 9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인 경우	연 0.01%		해당사항 없음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연 0.35%	후취판매수수료 : 3년미만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해당사항 없음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연 0.28%	-	해당사항 없음
A-e	인터넷에 의하여 가입하여,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연 0.50%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 이내	해당사항 없음
C-e	인터넷에 의하여 가입하여,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연 0.55%		해당사항 없음

주1)판매수수료율은 상기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여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90%이상을 럭셔리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된 기업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IBK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이익이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비교지수] S&P Global Luxury Index 90%+Call loan 10%

비교지수 정의

S&P Global Luxury Index: S&P에서 산출하여 공표하는 지수로 럭셔리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기업 80여개로 구성된 주가지수 입니다.

콜론: 금융기관 영업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 일 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것을 "콜론"이라 합니다.

비교지수 선정사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럭셔리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의 주식에 투자하므로, 펀드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상기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서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IBK 자산운용의 홈페이지(www.ibkasset.com)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1.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90%이상	집합투자규약 제3조제4항 각 호의 모투자신탁으로서 IBK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2.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10%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0%이하
3.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4.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나. 투자 제한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펀드 주요 투자 대상]

(1) IBK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1.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럭셔리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된 기업이 발행예정 또는 발행한 지분증권 및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2.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제외)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
5.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6.집합투자증권등	4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20%이하	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0%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
7.주식및채권관련 파생상품	매매에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8.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9.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10.투자증권의 차입	1 내지 4 의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1.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외화표시 자산을 포함)	

12.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외화표시 자산을 포함)
13.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2.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주1)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상기 2.채권, 4.어음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 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2) (주1)에서 정한 처분기간 또는 연장된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2.채권, 4.어음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주1)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처분의무는 소멸한다.

나. 투자제한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
동일종목투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같습니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가)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투자	이 투자신탁 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5호본문,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90%이상을 **IBK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인 IBK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전략]

자산의 60%이상을 **럭셔리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 상장예정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DR)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

각 투자되는 기초자산의 통화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외화표시 자산의 표시통화에 대하여 환헷지를 수행하며, 실질 투자 통화간의 환율변화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헷지의 범위는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 S&P Global Luxury Index 90%+Call loan 10%

비교지수 정의

S&P Global Luxury Index: S&P에서 산출하여 공표하는 지수로 럭셔리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기업 80여개로 구성된 주가지수 입니다.

콜론: 금융기관 영업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 일 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것을 "콜론"이라 합니다.

비교지수 선정사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럭셔리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므로, 펀드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상기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서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IBK 자산운용의 홈페이지(www.ibkasset.com)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투자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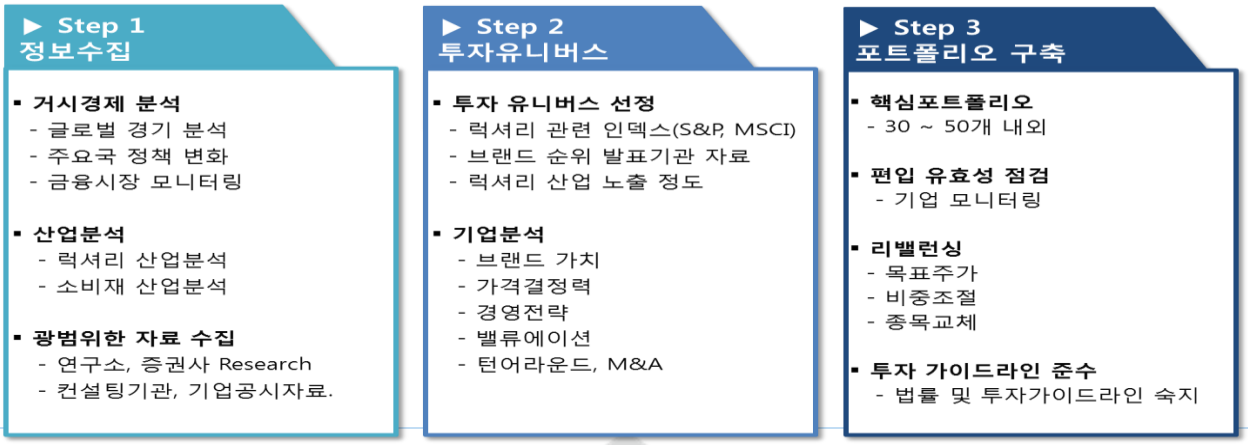

※ 상기의 프로세스는 실제 운용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목 선정>

브랜드 파워	▪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가격차별화 ▪ 글로벌 유통망 확보 ▪ 글로벌 소비자의 인지도 확보
매출다변화	▪ "중장기 투자"를 전제로 상품 포트폴리오 및 글로벌 매출 다변화를 통해 경기변동에 따른 매출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은 우량기업
성장기업	▪ 매출액 및 기업이익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장 기업 발굴

※ 상기의 운용전략은 실제 운용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 강력한 브랜드 가치 및 펀더멘털을 보유한 산업별 대표주로 핵심 포트폴리오 구성
▪ 산업별 및 종목별 비중 조절을 통한 초과수익 확보
▪ 전략 포트폴리오를 통한 초과수익 확보

구 분	비 중	내 용
핵심 포트폴리오	~80% 이내	▪ 벤치마크(BM)를 추종하는 가운데 ▪ 시황변동에 따라 벤치마크 대비 산업별 /종목별 비중 조절(수시)
전략 포트폴리오	~20% 이내	▪ 브랜드 인지도 확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발굴 ▪ 목표주가설정, 종목교체, 비중 조절(수시)

※ 상기의 운용전략은 실제 운용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위험 관리

1)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는 각 투자되는 기초자산의 통화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외화표시 자산의 표시통화에 대하여 환헷지를 수행하며, 환헷지의 범위는 80%이상을 헤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운용역의 판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환헤지 방법 및 목표 헤지 비율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표시자산의 변동성, 헤지수단 및 헤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통화선물, 선물환 계약등)을 통해 환헤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환헤지 비율은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해당 외화자산 순자산평가액의 80%이상 환헤지를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헤지는 불가능하며, 투자신탁 설정·해지, 환율변동, 주가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환헤지의 장단점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 등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4) 환헤지의 비용 등

환헤지를 실시항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며, 환헤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의 환헤지 비용

기간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원)
2016.02.20 ~ 2017.02.19	93.27	1,600,368

주)환헤지 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환헤지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과 해지전략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환해지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환헤지가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할 경우 외화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되며, 환율이 상승(원화대비 해당 외화가치 상승)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손실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따라서, 환헤지를 통해 환율변동이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해당 펀드수익률이 환율변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이 해당 펀드의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모투자신탁은 럭셔리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고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해외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로 외화표시 해외증권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 및 시간차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되는 기초자산의 통화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요 통화에 대하여 환헷지를 수행함으로써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환율변동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거래량이 적은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증권의 유동성 부족으로 신탁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외화자산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자산과 관련된 운용업무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였으나, 2017년 3월 10일부터 IBK자산운용의 직접운용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 및 수수료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통화가치 하락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환헤지를 실행함에 따라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발생 가능한 환차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

과세에 따른 위험	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매입,환매,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환매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오후3시30분 경과후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므로 환매청구시와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투자신탁재산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6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게 되는 모투자신탁은 럭셔리 산업 관련 주식에 투자하므로 채권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해당 투자신탁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 대상 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 **14.3%** (직전결산일 기준 표준편차: 13.4%)

주 1)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 실제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고려하여 투자위험등급을 분류 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3) 수익률의 변동성(표준편차)은 투자기간 동안 펀드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써, 펀드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음을 의미합니다.

<변동성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수익률 변동성주1)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주 1)수익률 변동성: $\sigma = \sqrt{\frac{52}{156-1}\sum_{t=0}^{155}(r_t - \bar{r})^2}$, $\bar{r} = \frac{1}{156}\sum_{t=0}^{155} r_t$, r_t: 측정 기준시점에서 t주전 월요일의 주간 수익률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A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1	적립식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로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 정액적립식 :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 또는 좌수를 정하여 매월 투자하는 방식 (나) 자유적립식 : 일정기간동안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투자하는 방식
C-w	랩어카운트 고객
C-f	투자자가 법 제 9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인 경우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A-e	인터넷에 의하여 가입하여,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e	인터넷에 의하여 가입하여,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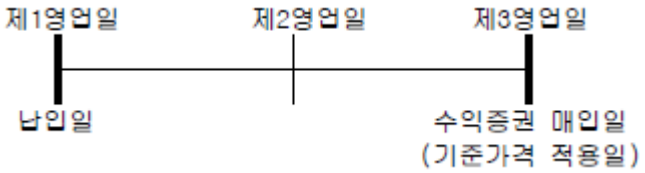

(나) **오후 3시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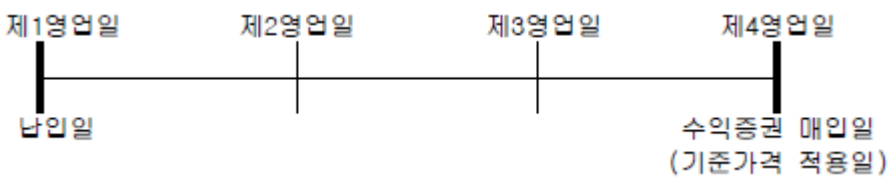

주)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

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선취판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시점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의 각 목의 종류에 따라 부과합니다.

(가) 종류 A : 납입금액의 1% 이내

(나) 종류 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주)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판매수수료율은 상기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여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5)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주)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 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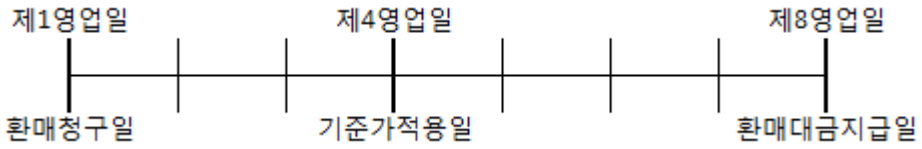

(나) **오후 3시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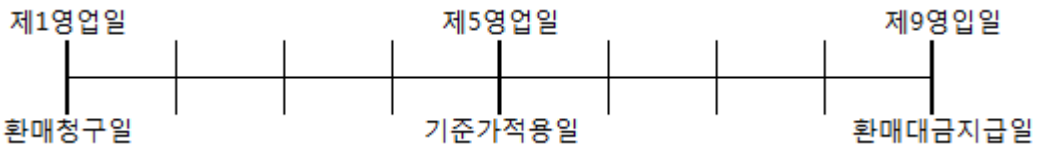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다) 상기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국가의 거래소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 환매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후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환매금액을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의 종류 집합투자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 종류 S 수익증권 : 3 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4)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 6영업일 (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 7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가)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②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② 투자신탁 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판매회사·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종류별 기준가격이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유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투자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주)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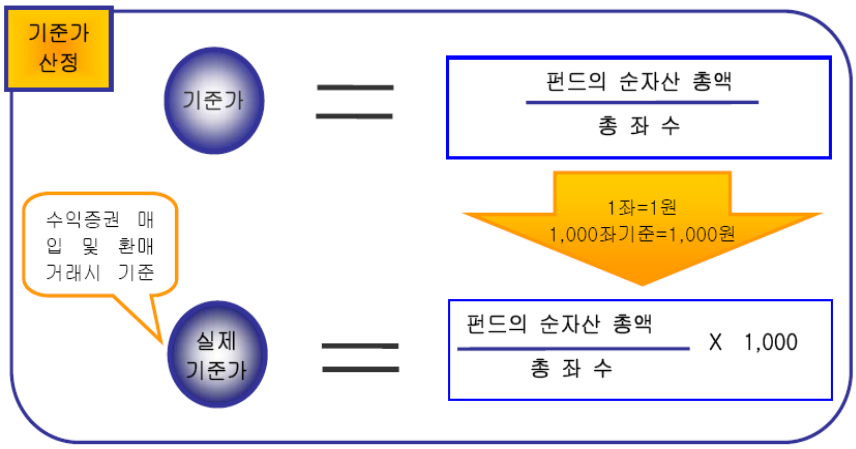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③장외파생상품	당해 파생상품의 발행회사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그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 ***평가회사의 가격평가 방법** 국내 KRW IRS금리 및 USD를 비롯한 주요 통화 IRS 금리를 기초로 하여 고정금리부분 평가와 변동금리부분평가에 의한 차이에 의해 가격을 평가함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산술평균한 가격(상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합니다)
⑥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⑧외화표시 증권	외화로 표시된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시장의 최종시가
⑨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

는 환율	는 최종시가로 한다.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지한 환율이 잇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⑩기타 상기에 명시된 자산 이외에는 관련법령 및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① 구성

평가업무 담당임원, 운용업무 담당임원,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집합투자재산 평가 담당 부서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② 업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가)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나) 장외파생상품 및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부도채권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출자전환주식 등 시장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집합투자재산 평가와 관련된 채권평가기관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바) 채권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사)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아)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자) 기타 관련법규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등에 의해 위임된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법 제 76 조제 4 항에서 정한 판매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table>
<tr><td>구분</td><td colspan="8">수수료율</td><td rowspan="2">부과기준</td></tr>
<tr><td>보수구조</td><td>종류
A</td><td>종류
A-e</td><td>종류
C1</td><td>종류
C-w</td><td>종류
C-e</td><td>종류
C-f</td><td>종류
S-P</td><td>종류
S</td></tr>
<tr><td>선취판매수수료</td><td>1%
이내</td><td>0.5%
이내</td><td colspan="6">해당사항 없음</td><td>납입금액
기준</td></tr>
<tr><td>후취판매수수료</td><td colspan="7">해당사항없음</td><td>3 년미만 환매시 0.15% 이내</td><td>환매금액
기준</td></tr>
<tr><td rowspan="2">환매수수료</td><td colspan="8">해당사항 없습니다</td><td></td></tr>
<tr><td colspan="8">해당사항 없습니다</td><td></td></tr>
<tr><td>전환수수료</td><td colspan="8">해당사항 없습니다</td><td></td></tr>
</table>

주1)판매수수료율은 상기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여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2)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①이 투자신탁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전부가 환매되는 경우
②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 변경에 대하여 이의 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는 제외)
③"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른 목적식 투자자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보수구조	종류 A	종류 S	종류 C1	종류 C-w	종류 C-f	종류 S-P	
수익자의 자격	선취판매수수료가 있는 경우	주6)	주1)	랩어카운트 고객	주2)	주7)	
집합투자업자보수	1.00	1.00	1.00	1.00	1.00	1.00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1.00	0.35	1.10	0.00	0.01	0.28	
신탁업자 보수	0.07	0.07	0.07	0.07	0.07	0.07	
일반사무관리보수	0.02	0.02	0.02	0.02	0.02	0.02	
기타 비용	0.0024	-	0.0024	-	-	-	사유 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2.0924	1.4400	2.1924	1.0900	1.1000	1.3700	-
합성 총보수 및 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2.1113	1.4598	2.2113	1.0956	1.1000	1.3700	-
증권 거래비용	0.0432	0.0434	0.0431	0.0494	0.0438	-	사유 발생시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보수구조	종류 A-e	종류 C-e					
수익자의 자격	선취판매수수료가 있고 인터넷에 의해 가입	인터넷에 의해 가입					
집합투자업자보수	1.00	1.00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50	0.55					
신탁업자 보수	0.07	0.07					
일반사무관리보수	0.02	0.02					
기타 비용	-	-					사유 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1.5900	1.6400					-
합성 총보수 및 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1.6058	1.6558					-

증권 거래비용	-	-					사유 발생시

주 1)정액적립식 :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 또는 좌수를 정하여 매월 투자하는 방식
자유적립식 : 일정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투자하는 방식
주2)투자자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인 경우
주3)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매매수수료 제외)으로써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4)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 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주7)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집합투자기구	투자기간	1 년	3 년	5 년	10 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12	751	1,215	2,49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포함)	314	757	1,225	2,516
종류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5	693	1,187	2,54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포함)	227	699	1,197	2,567
종류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2	348	604	1,33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포함)	112	350	607	1,341
종류 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6	360	624	1,37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포함)	116	360	624	1,377
종류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8	459	792	1,73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포함)	150	465	802	1,756
종류 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4	447	772	1,69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포함)	144	447	772	1,692
종류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65	613	983	2,02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67	618	992	2,041

	(모투자신탁의 보수포함)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2	534	919	2,00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포함)	174	539	928	2,017

주1)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종류S는 10년 동안 보유하는 것을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수 있으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 8월 1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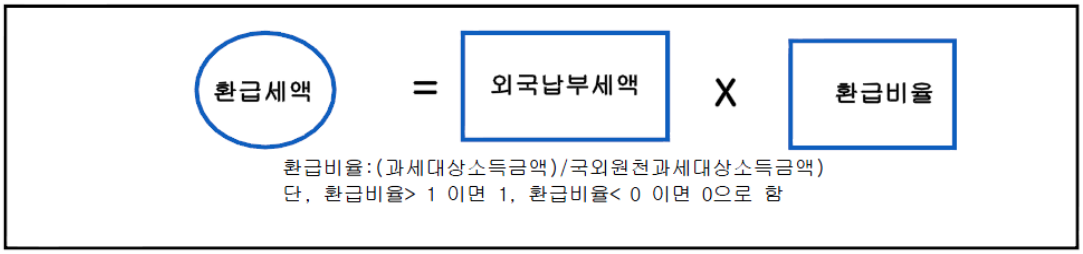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7 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함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

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주1) ※ (주1)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 수령시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본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1 기(2017.02.20 - 2017.08.19)	회계기간미경과	해당없음
제 10기(2016.02.20 - 2017.02.19)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9기(2015.02.20 - 2016.02.19)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1 기 (2017.08.19)	제 10기 (2017.02.19)	제 9기 (2016.02.19)
운용자산	9,547,413,708	9,736,035,820	12,780,523,037
증권	9,424,964,280	9,621,765,627	12,510,297,043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22,449,428	114,270,193	270,225,994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71,068,546	134,580,173	41,041,078
자산총계	9,618,482,254	9,870,615,993	12,821,564,115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18,982,494	183,154,016	108,387,110
부채총계	118,982,494	183,154,016	108,387,110
원본	7,905,906,946	9,012,755,753	13,513,168,651
수익조정금	-221,436,489	-303,967,530	-188,891,560
이익잉여금	1,815,029,303	978,673,754	-611,100,086
자본총계	9,499,499,760	9,687,461,977	12,713,177,005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1 기 (2017.02.20 - 2017.08.19)	제 10기 (2016.02.20 - 2017.02.19)	제 9기 (2015.02.20 - 2016.02.19)
운용수익	1,158,785,484	1,760,157,727	-322,561,701
이자수익	552,060	1,543,717	4,100,71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158,233,424	1,758,614,010	-326,662,411
기타수익	1,449,743	2,866,399	4,944,177
운용비용	99,898,981	247,971,259	290,411,390
관련회사 보수	99,898,981	247,971,259	290,411,39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043,179	2,633,291	3,071,172
당기순이익	1,059,293,067	1,512,419,576	-611,100,086
매매회전율	0.00	0.00	0.00

나. 대차대조표

(단위:원)

과 목	제4기(2017.08.19)		제3기(2017.02.19)		제2기(2016.02.19)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22,449,428		114,270,193		270,225,994
1. 현금및현금성자산	122,449,428		114,270,193		270,225,994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9,424,964,280		9,621,765,627		12,510,297,043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9,424,964,280		9,621,765,627		12,510,297,043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71,068,546		134,580,173		41,041,078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57,678		53,608		161,045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71,010,868		134,526,565		40,880,033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9,618,482,254		9,870,615,993		12,821,564,115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118,982,494		183,154,016		108,387,11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70,492,437		133,541,746		40,567,463	
4. 수수료미지급금	48,490,057		49,612,270		67,819,647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118,982,494		183,154,016		108,387,110
자 본						
1. 원 본	7,905,906,946		9,012,755,753		13,513,168,651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1,593,592,814		674,706,224		-799,991,646	
(발행좌수 당기: 7,905,906,946 좌	이익잉여금	1,815,029,303		978,673,754		-611,100,086
전기: 9,012,755,753 좌	수익조정금	-221,436,489		-303,967,530		-188,891,560
전전기: 13,513,168,651 좌)						
(기준가격 당기: 1,266.65 원						
전기: 1,121.56 원						
전전기: 961.15 원)						
자 본 총 계		9,499,499,760		9,687,461,977		12,713,177,00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9,618,482,254		9,870,615,993		12,821,564,115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4기(2017.02.20-2017.08.19) 금 액		제3기(2016.02.20-2017.02.19) 금 액		제2기(2015.02.20-2016.02.19)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2,001,803		4,410,116		9,044,887
1. 이 자 수 익	552,060		1,543,717		4,100,710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1,449,743		2,866,399		4,944,177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158,233,426		1,762,899,353		1,337,678,098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581,613,431		1,304,133,712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576,619,995		458,765,641		1,337,678,098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		4,285,343		1,664,340,509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2		4,285,343		1,664,340,509	
운 용 비 용		100,942,160		250,604,550		293,482,562
1. 운용수수료	47,183,768		116,992,481		136,901,667	
2. 판매수수료	49,412,398		122,789,328		143,926,668	
3. 수탁수수료	3,302,815		8,189,450		9,583,055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043,179		2,633,291		3,071,172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059,293,067		1,512,419,576		-611,100,086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133987546		0.167808783		-0.04522256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 억좌, 억원)

[투자신탁 전체]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02.20 - 2017.08.19	87	97	16	19	27	33	75	95
2016.02.20 - 2017.02.19	133	128	22	22	68	71	87	97
2015.02.20 - 2016.02.19	147	147	72	73	86	89	133	128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종류 A]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02.20 - 2017.08.19	41	44	9	11	13	15	38	46
2016.02.20 - 2017.02.19	66	62	12	11	36	36	41	44
2015.02.20 - 2016.02.19	72	72	33	33	39	40	66	62

[종류 C1]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02.20 - 2017.08.19	49	52	6	7	15	17	40	48
2016.02.20 - 2017.02.19	69	65	11	11	32	31	49	52
2015.02.20 - 2016.02.19	77	77	26	26	34	36	69	65

[종류 C-w]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02.20 - 2017.08.19	0	0	0	0	0	0	0	0
2016.02.20 - 2017.02.19	0	0	0	0	0	0	0	0

[종류 S]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02.20 - 2017.08.19	0	0	1	1	0	0	1	1
2016.02.20 - 2017.02.19	0	0	0	0	0	0	0	0
2015.02.20 - 2016.02.19	0	0	0	0	0	0	0	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16.10.01 ~ 17.09.30	15.10.01 ~ 16.09.30	14.10.01 ~ 15.09.30	13.10.01 ~ 14.09.30	12.10.01 ~ 13.09.30
IBK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증권자[주식]	28.94	4.98	7.47	-3.21	28.96
비교지수	24.90	-1.80	2.58	-5.20	33.66
IBK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증권자 S-P					
비교지수					
IBK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증권자 A	26.34	2.82	5.28	-5.22	26.36
비교지수	24.90	-1.80	2.58	-5.20	33.66
IBK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증권자 C1	26.21	2.72	5.18	-5.31	26.17
비교지수	24.90	-1.80	2.58	-5.20	33.66
IBK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증권자 C-w	29.05	2.94			
비교지수	24.90	-7.37			
IBK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증권자 S	27.14	3.49	5.96		
비교지수	24.90	-1.80	2.58		

주 1)비교지수 : 설정일~2017.03.09 까지: MSCI World Textile Apparels and Luxury goods Index 90%+Call loan 10%
2017.03.10~: S&P Global Luxury Index 90%+Call loan 10%

주 2)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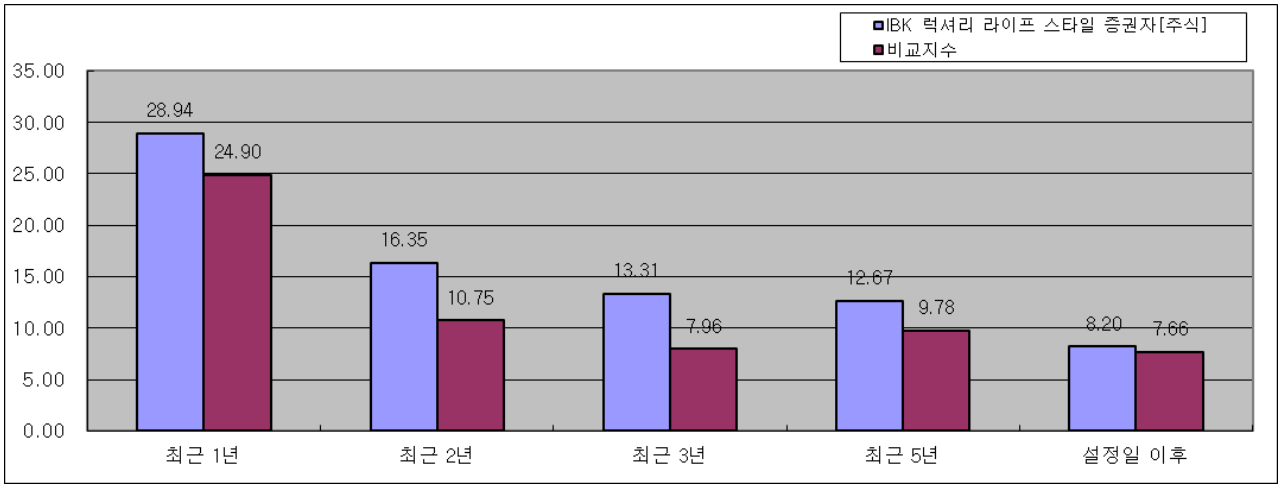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16.10.01 ~ 17.09.30	최근 2년차 15.10.01 ~ 16.09.30	최근 3년차 14.10.01 ~ 15.09.30	최근 4년차 13.10.01 ~ 14.09.30	최근5년차 12.10.01 ~ 13.09.30
IBK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증권자[주식]	28.94	4.98	7.47	-3.21	28.96
비교지수	24.90	-1.80	2.58	-5.20	33.66
IBK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증권자 S-P					
비교지수					
IBK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증권자 A	26.34	2.82	5.28	-5.22	26.36
비교지수	24.90	-1.80	2.58	-5.20	33.66
IBK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증권자 C1	26.21	2.72	5.18	-5.31	26.17
비교지수	24.90	-1.80	2.58	-5.20	33.66
IBK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증권자 C-w	29.05	2.94			
비교지수	24.90	-7.37			
IBK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증권자 S	27.14	3.49	5.96		
비교지수	24.90	-1.80	2.58		

주 1)비교지수 : 설정일~2017.03.09 까지: MSCI World Textile Apparels and Luxury goods Index 90%+Call loan 10%
2017.03.10~: S&P Global Luxury Index 90%+Call loan 10%
주 2)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수익률을 연간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수익률'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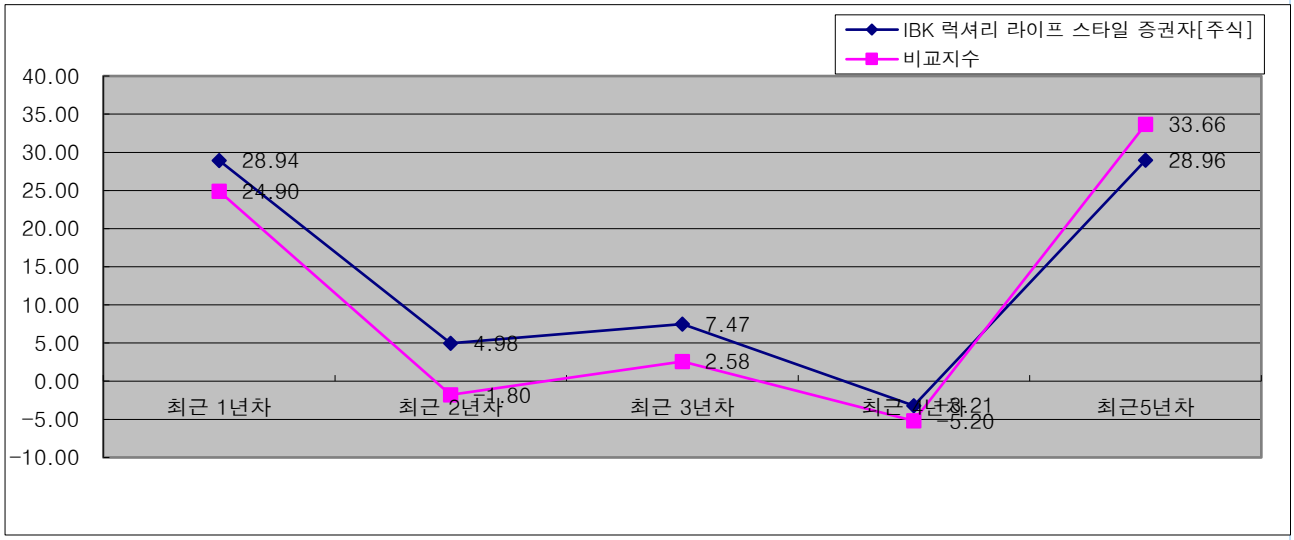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17.08.19,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0	0	94	0	0	0	0	0	1	0	96
	(0.00)	(0.00)	(0.00)	(98.35)	(0.00)	(0.00)	(0.00)	(0.00)	(0.00)	(1.28)	(0.37)	(100.00)
합계	0	0	0	94	0	0	0	0	0	1	0	96
	(0.00)	(0.00)	(0.00)	(98.35)	(0.00)	(0.00)	(0.00)	(0.00)	(0.00)	(1.28)	(0.37)	(100.00)

주1) ( )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7.08.19, 단위 : 억원,%)

- IBK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0	0	0	1	0	0	0	0	6	1	9
	(0.00)	(0.00)	(0.00)	(0.00)	(14.06)	(0.00)	(0.00)	(0.00)	(0.00)	(69.11)	(16.83)	(7.00)
HKD	7	0	0	0	0	0	0	0	0	0	0	7
	(100.57)	(0.00)	(0.00)	(0.00)	(0.00)	-(0.57)	(0.00)	(0.00)	(0.00)	(0.00)	(0.00)	(5.00)
GBP	10	0	0	0	0	0	0	0	0	0	0	10
	(101.47)	(0.00)	(0.00)	(0.00)	(0.00)	-(1.47)	(0.00)	(0.00)	(0.00)	(0.00)	(0.00)	(9.00)
CHF	8	0	0	0	0	0	0	0	0	0	0	7
	(101.03)	(0.00)	(0.00)	(0.00)	(0.00)	-(1.03)	(0.00)	(0.00)	(0.00)	(0.00)	(0.00)	(6.00)
JPY	2	0	0	0	0	0	0	0	0	0	0	2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0)
EUR	41	0	0	0	0	-1	0	0	0	1	0	42
	(99.40)	(0.00)	(0.00)	(0.00)	(0.00)	-(2.89)	(0.00)	(0.00)	(0.00)	(3.49)	(0.00)	(35.00)
AUD	1	0	0	0	0	0	0	0	0	0	0	1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USD	41	0	0	0	0	0	0	0	0	0	0	41
	(100.63)	(0.00)	(0.00)	(0.00)	(0.00)	-(0.63)	(0.00)	(0.00)	(0.00)	(0.00)	(0.00)	(34.00)
DKK	1	0	0	0	0	0	0	0	0	0	0	1
	(96.9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05)	(0.00)	(0.00)
합계	110	0	0	0	1	-2	0	0	0	7	1	119
	(92.88)	(0.00)	(0.00)	(0.00)	(1.03)	-(1.45)	(0.00)	(0.00)	(0.00)	(6.31)	(1.23)	(100.00)

주1)( )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펀드 운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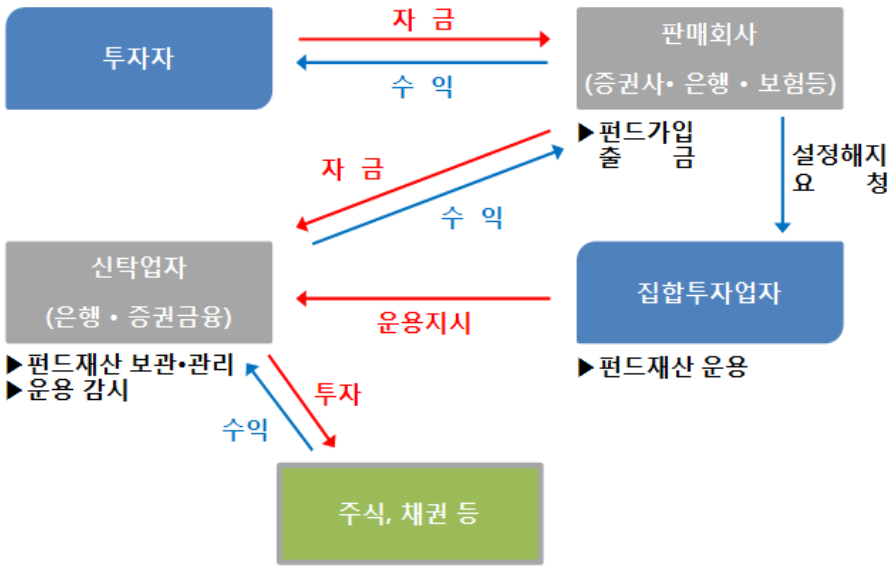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2017.09.30.기준)

회사명	IBK 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연락처 : 02-727-8800, www.ibkasset.com)
회사 연혁	2004. 10. 26 기은 SG 자산운용 설립 (중소기업은행 50%, Societe Generale AM 50% 출자) 2004. 12. 24 금융감독위원회 자산운용업 본허가 취득 2009. 02. 17 IBK 그랑프리국공채 채권형 펀드 - 국내 채권형 베스트 펀드 수상 <2008 매일경제신문·제로인 한국 펀드 대상> 2010. 01. 28 Societe Generale AM 과 합작 종결(중소기업은행 100% 출자로 전환) <"IBK 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2013. 11. 28 헤럴드펀드대상 최우수 국내 중소형펀드 수상 <IBK 중소형주코리아 주식 펀드> 2014. 03. 18 매일경제신문 금융상품대상 은상 수상 <IBK 신성장특허보유기업 주식펀드>
자본금	200 억
주요주주현황	IBK 기업은행 (10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재무상태표-단위:억원]

계정과목	2016.12.31	2015.12.31.
현금및예치금	371	328
매도가능금융자산	15	15
유형자산	4	4
무형자산	10	11
기타자산	74	70
자산총계	**504**	**458**
기타부채	29	23
부채총계	**29**	**23**
자본금	200	200
이익잉여금	275	235
자본총계	**475**	**435**

[포괄 손익계산서 - 단위:억원]

계정과목	'16.1.1 ~'16.12.31	'15.1.1 ~'15.12.31
영업수익	153	142
영업비용	89	89
영업이익	64	53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64	53
당기순이익	**48**	**40**

라. 운용자산 규모

(2017.09.30 현재, 단위:억원)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	파생					
수탁고	8,280	10,502	7,582	937	6,016	0	0	0	99,582	132,899

주)한국금융투자협회 기준. 일임자산 제외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업무의 위탁]

이 투자신탁은 해외자산 운용에 대한 업무를 **Credit Suisse(Singapore) Limited**에 위탁하였으나, 2017년 03월 10일부터 IBK자산운용의 직접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시티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 ☏ 02)1588-7000
회 사 연 혁 등 (홈 페 이 지 참 조)	www.citibank.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가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

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 02-2168-0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00. 06 설립 (www.aita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88 상환빌딩 4층 ☏ 02-399-335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4층 ☏ 02-398-39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 빌딩 4층 ☏ 02-3215-14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화빌딩 4층 ☏ 02-721-53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01.05 설립 (www.koreaap.com)	2000.06. 설립 (www.nicepni.com)	2000.06. 설립 (www.bond.co.kr)	2011.06. 설립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 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 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능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할 것으로 보아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5) 투자신탁의 합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 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 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시행령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 투자 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 법 제193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 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내용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으로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

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합니다) 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의 3) 내지 4) 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

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 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나)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다)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에 한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라)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없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9)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2)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에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나) 신탁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다)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

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법 제247조제5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룡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에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②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③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를 거치는 경우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증권거래 및 장내파생상품거래]

▶ 중개회사 선정 목적 및 필요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은 바탕으로 중개회사의 역량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여 거래 중개회사를 선정함으로써 운용의 투명성 및 펀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평가 항목

중개거래시장점유율, 거래관련자격보유,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산정합니다.

▶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열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름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펀드코드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투자자가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환매조건부 매수/매도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